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내 역 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3년도 예산(안)	62.6억 원 내외
지원 규모 ¹⁾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4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주관연구개발 기관 자격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 기관 자격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권고)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수요기업 ²⁾ 참여 필수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하며, 1차년도부터 참여를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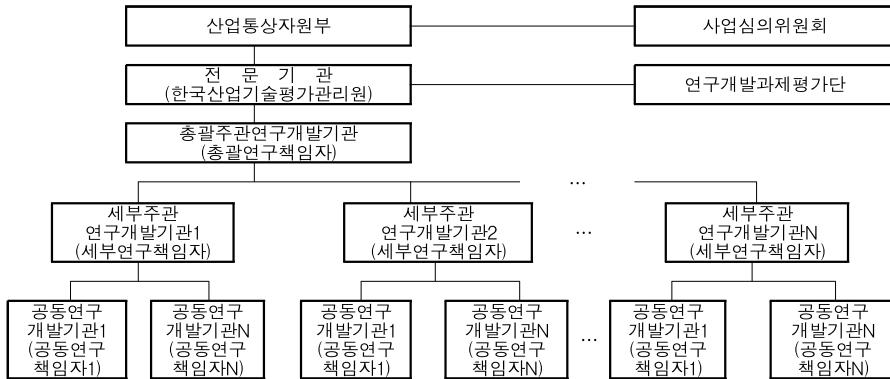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 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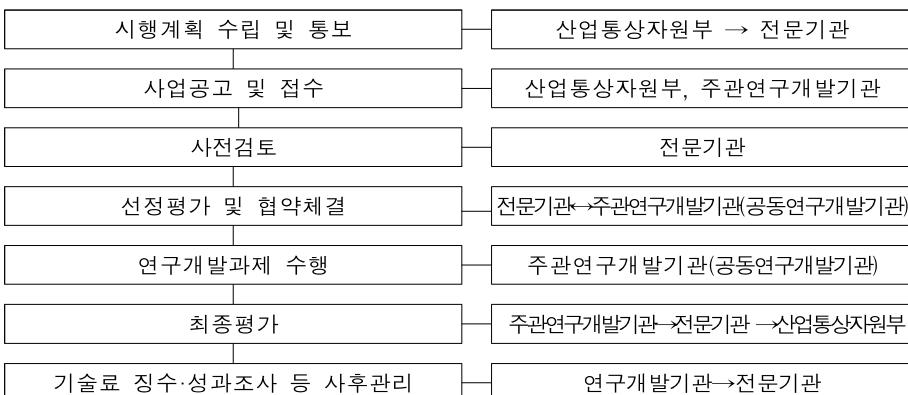
- 패키지형 : 통합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추진절차

- 패키지형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동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과제 특징(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 ¹⁾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기준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기준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첼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 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 해당여부는 RFP 참조 요망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사업 특별지침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기준	'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첼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해외연계)'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현금부담비율을 대기업 15%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계상할 수 있음

* 해당여부는 RFP 참조 요망

-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⑤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와 같음

- (패키지형) 50% 이상 권고 (단, 대기업 주관, 제한 없음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3-2. 기술료 등 정수 기준

□ 기술료 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정수 대상

- '기술료 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①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② 기술료 납부 기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세부사업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8%로 책정

* 인건비 비중 : 연구개발계획서의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인건비 비율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을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2월 3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난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 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을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 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된 중소·중견기업 협약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 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을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공통운영요령 별표5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2월 3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 불가가 원칙이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 한 경우 연차별 연구수당액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 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구분	연구개발과제 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통합형	혁신제품형	지정공모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통합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 신청 시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간 협의를 통하여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패키지형

순번	역할	과제명	과제 유형			과제 특징
			가	나	다	
1	총괄	대량생산 가능한 민군겸용 저궤도 군집위성용 고성능 지구관측 광학모듈 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해외연계, 특허연계, 대형통합형
2	세부	고성능 지구관측 EO/IR 광학부품 개발 및 모듈화 기술 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해외연계, 특허연계, 대형통합형
3	세부	초소형/소형위성용 광학부품 코팅 및 저가/양산기술 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특허연계, 대형통합형
4	총괄	소형모듈원전 구조용 소재 및 부품화 기술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5	세부	항복강도 410MPa급 고강도 오스테나이트계 내식강 제조 및 공정 기술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특허연계, 대형통합형
6	세부	인장강도 760MPa급 고온균열저항성이 우수한 오스테나이트계 용접재 및 용접기술 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7	세부	오스테나이트계 소형원자로용기의 80년 운전대응 증성자 조사취화 및 내환경 성능평가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8	총괄	반도체 Burn-in-test PCB용 280°C 고내열 나노복합 프리프레그 소재 및 열팽창 10ppm/oC급 다층기판 제조기술 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표준연계, 특허연계, 대형통합형
9	세부	반도체 Burn-in-test PCB용 280°C 이상의 고내열 및 고절연성 나노복합 프리프레그 소재 기술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0	세부	열팽창계수 10ppm/oC 이하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Burn-in-test PCB용 다층기판 제조기술 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1	총괄	고효율 전력변환용 Ni-free 자성 페이스트 소재 및 부품화 기술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특허연계, 대형통합형
12	세부	Ni-free 포화자화 >1.6T급 자성 페이스트 및 무가압 몰딩 기반 인더터 제조 기술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3	세부	수소연료전기자동차/UAM용 200kW급 고효율 부스터 컨버터 제조 기술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4	세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5kW급 고효율 통합 전력변환장치 제조 기술개발	통합	혁신 제품	지정 공모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 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과제의 RFP는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 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참고

R&D자율성트랙(舊 R&D샌드박스) 신청
<input type="checkbox"/> R&D자율성트랙
○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 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평가·협약단계 각각 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 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정평가일 전 영업일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p>1. 기업의 부도</p> <p>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500% 이상, 유동비율 50%인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지원제외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p>※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원」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를 적용하지 아니함</p> <p>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p>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p> <p>※ 결산 재무제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p>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10.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 등의 개발은 지원 가능)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3. 8. 3. (목) ~ 2023. 9. 1. (금)

- 제기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재부품전략팀(☎ 053-718-848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평가 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충실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조직 역량 ▪ 기술의 선점성(선도 가능성 등) 및 파급 효과
경제성 및 사업성(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업의 사업화 투자 전략 ▪ 수요기업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 시장진입 및 독과점 가능성 ▪ 시장규모 및 성장성 ▪ 고용창출 및 상생 협력 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경제성 및 사업성, ②기술성 및 개발능력,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통합형 :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 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체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패키지형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3. 8. 3. (목) ~ 2023. 9. 1. (금)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3. 8. 10. (목)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8. 3. (목) ~ 2023. 9. 1. (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 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의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는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모든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온라인 제출을 완료해야 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 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서류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3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5	(국외기관용)산업기술 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8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 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10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11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 고
12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13	수요기업 확약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p>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p>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http://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p>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p> <p>※ 상기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사업공고에 첨부된 FAQ를 참고 할 것</p>	<p>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http://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p>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p> <p>※ 상기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사업공고에 첨부된 FAQ를 참고 할 것</p>	<p>영리기관(주관+ 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p>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요기업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 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부분류 바이오·의료분야는 수요기업으로 의료기관을 인정함(의료기관 정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참조)
 - ※ 수요기업은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 입력을 완료해야 함. 미준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창출) 연구개발과제

- 특허연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이 1차년도에 특허 전략 수립비(4,500만원)를 계상하여 특허청 IP-R&D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 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 함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 국제공동(해외연계) :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 복수형 R&D :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이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해당
- 대형통합형 :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벤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가 해당됨 (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서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5개 이상 참여하여야 함(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 서비스형 : 공통운영요령 [별표4]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연구개발과제(통합형/병렬형)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함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목록을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 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상세 RFP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공급망팀 : 053-718-8455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RFP(기획의도) 문의

- 패키지형

순번	총괄과제명	신규평가 접차		RFP(기획의도)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1	대량생산 가능한 민군겸용 저궤도 군집위성용 고성능 지구관측 광학모듈 개발	공급망 탄소중립팀	053) 718 - 8455	우주항공PD	042) 712 - 9317
2	소형 모듈원전 구조용 소재 및 부품화 기술개발			금속재료PD	042) 712 - 9303
3	반도체 Burn-in-test PCB용 280°C 고내열 나노복합 프리프레그 소재 및 열팽창 10ppm/oC급 다층기판 제조기술 개발			탄소나노PD	042) 712 - 9310
4	고효율 전력변환용 Ni-free 자성 페이스트 소재 및 부품화 기술개발			금속재료PD	042) 712 - 9303

- 【붙임】
01.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4. 관련 법령 및 규정
 05.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메뉴얼
 06.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7. 재무제표 업로드 관련 FAQ
 08.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9.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